

第41回

서울特別市鍾路區議會 市民行政委員會會議錄

第1號

서울特別市鍾路區議會事務局

日 時 1994年10月20日(木) 10時14分

場 所 市民行政委員會室

議事日程

1. 서울特別市鍾路區地名委員會條例中改正條例(案)

審査된 案件

1. 서울特別市鍾路區地名委員會條例中改正條例(案)(鍾路區廳長 提出) 1面

(10時14分 開議)

○委員長 羅在岩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위원 11명 중 출석위원 5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회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1차 시민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가을은 이렇게 결실의 계절 천고마비, 독서의 계절, 등화가친 이런 여러 가지 미사여구를 섞어 쓰는 계절인 것 같습니다. 이 좋은 때 귀중한 시간을 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41회 임시회 1차 시민행정위원회는 한 건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의안제장의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議案係長 林星圭 議案係長 林星圭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41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1차 시민행정위원회 회의는 지방자치법 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보고 드릴 사항은 서울특별시종로구지명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은 '94년 5월 26일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94년 10월 5일 의장으로부터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1. 서울特別市鍾路區地名委員會條例中改正條例(案)(鍾路區廳長 提出)

(10時16分)

○委員長 羅在岩 의안제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종로구지명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總務局長 洪起和 안녕하세요? 총무국장 홍起和입니다.

저희 구의 발전을 위하여 항상 애쓰시고 계시는 시민행정위원회 羅在岩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우리구에서 제출한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명위원회”에 대하여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종로구지명위원회는 우리구 관내의 지명의 제정이나, 변경, 조정 등을 심의 결정하기 위하여 설치 운영하게 되어 있으며 그 조직은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근래에는 지명위원회를 개최한 실적이 없습니다.

이어서 이번 우리구에서 제출한 서울특별시종로구지명위원회조례개정(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서울특별시종로구지명위원회조례개정(안)을 상정하게 된 것은 상위법령인 측량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이에 맞게 구조례를 재정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주요골자는 상위법인 측량법 시행령 제23조가 1994. 5. 23자로 (대통령령 제14267호)개정되었는데, 새로 개정된 시행령 23조는 그 내용이 “연평균액의 기준금액”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대로 쓸 수가 없기 때문에, 종로구 지명위원회조례 제1조 본문 중 측량법 시행령 제23조를 삭제해 해서, “측량법 제58조 및 등

법 시행령 제23조”로 된 것을 “측량법 제58조 제4항”으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종로구지명위원회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종로구지명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제출년월일 : 1994. 9.

제 출 자 : 종로구청장

1. 개정사유

법령이 개정되어 현실과 맞지 아니하거나 불합리한 사항을 개선·보완 및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측량법 시행령 제23조가 1994. 5. 23 대통령령 제14267호로 개정됨에 따라 조례 제1조(목적) 본문 중 측량법 시행령 제23조를 삭제하여 개정·보완 코자 함.
(안 제1조)

3. 참고자료

- 가. 관계법령 : 측량법 제58조, 서울특별시지명위원회 조례 제1조
- 나. 예산조치 : 필요없음.
- 다. 합 의 : 필요없음.

서울특별시종로구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종로구지명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종로구지명위원회조례중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 1 조 본문중 “측량법 제58조 및 동법시행령 제23조”를 “측량법 제58조 제4항”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 부터 시행한다.

○委員長 羅在岩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蔣昭秀 專門委員 蔣昭秀입니다. 1994년 9월 26일 종로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종로구지명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골자는 측량법시행령 제32조가 1994년 5월 23일 개정됨에 따른 본문 중 적용조문을 자구수정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검토사항입니다. 관련법규를 보겠습니다. 측량법 제57조입니다. 지방자치법 기타 다른 법령에 정한 이외의 지명은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하고 건설부장관이 고시한다. 측량법 제58조 지명위원회 설치에 관한 규정입니다. 1항 지명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 결정하기 위하여 건설부에 중앙위원회, 시·도에 시·도위원회, 구에 구지명위원회를 둔다. 3항 건설부장관은 지명위원회 심의의 결정사항을 고시함으로써 지명이 확정된다. 4항 구지명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측량법시행령 제35조입니다. 3항 구지명위원회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위원은 3인 이상 구청장이 위촉한다.

지방자치법 제4조입니다. 3항 구와 읍, 면, 동의 명칭과 구역은 종전에 의하고 이를 변경하거나 폐치·분합할 때에는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4항 리의 구역은 자연의 촌락을 기준으로 하되, 그 명칭과 구역은 종전에 의하고 이를 변경, 폐치, 분합할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검토의견입니다. 지명 결정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법과 측량법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법에서는 동, 리 이상의 지명에 관하여 자치단체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그 이하 자연부락 등 지명은 측량법에서 규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측량법 규정에 의하여 제정된 조례 내용 중 모법시행령 개정에 따른 자구수정 내용으로서 적절한 개정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羅在岩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委員長!」하는 이 있음)

예. 朴勸先委員! 질의하십시오.

○朴勸先委員 朴勸先입니다. 내용을 제가 완전히 파악을 못해서 여쭙어 봅니다.

구, 읍, 면, 동의 명칭과 구역을 종전에

의하고 이를 변경하거나 폐치, 분합할 때에는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자치단체조례로 정한다. 리의 구역은 자연의 촌락을 기준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번지가 3개인 것을 하나로 통합하는 것 또는 하나를 둘로 분할하는 것 이런 것도 여기에 해당되는 것입니까?

○總務課長 裴鎮燮 이번 통폐합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하게 되고 측량법은 그것 이하를 하게 됩니다.

(「委員長!」하는 이 있음)

○委員長 羅在岩 예. 丁昌熙委員! 질의하십시오.

○丁昌熙委員 丁昌熙委員입니다. 지금 동에 말이죠. 1, 2가동 3, 4가동 5, 6가동 옛날에 4, 5, 6가동 할 적에 이런 동의 조정 구역의 조정도 조정위원회에서 심의를 하는 것입니까?

○總務課長 裴鎮燮 아까 전문위원이 보고드린 바와 같이 동 경계 조례는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승인을 받아서 자치구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본 종로구 지명위원회 조례는 동 구역 변경이라든지 그런 포괄적인 큰 범위의 지명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다만 리 이하의 지명을 제정하거나 명칭을 변경하거나 부분적으로 소규모 조정일 경우에만 해당이 되겠습니다.

○丁昌熙委員 그러면 과거의 종로구에 있어서 동 명칭을 개정하거나 동의 구역을 조정한 사례가 많지 않지만 있으리라 보는데 그 당시에는 지방의회 의원이 지방의회가 구성되기 전이었었고 지금 동 지명위원회 사실상 구청장 아니 국장님들만으로 구성된 이러한 위원회로서는 다소 앞으로는 어렵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해봅니다. 사실상 지금 내무부에 앞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방향이 한 행정동에 법정동이 심지어 1, 2, 3, 4동인 경우에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하나나 두개로 조정하는 방침을 지금 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종로같은 경우에는 정도 600년이 경과된 전통있는 지역이고 특색이 각동마다 아무리 세대수가 적고 거주인구가 적다 하더라도 과거의 역사성이 있는데 그것을 어

떻게 조정을 해서 그 역사성과 전통성을 유지 관리시킬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이 주민들의 관심사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특히나 과거의 현대소설 잡지에도 종로구의 각동에 지금은 택시운전기사가 잘 알지도 못하고 찾아가기도 어렵지만 그 소설에 나오는 각동의 명칭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이런 것이 앞으로 통폐합을 통해서 없어질 경우 정말 종로구의 어느 동이 어디 있었던 것조차도 흔적이 남기 어려울텐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내무부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했을 적에 그런 문제는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문제와 둘째는 동마다 주민의 연대의식이 있고 같은 동이라는 의식이 있는 맥락의 주민 정서상 있는 지역이 많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이것을 어떻게 조정해서 해야 하는지 이런 문제도 과연 과거의 전통성과 역사성을 지니고 있는 사람이 참여를 해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 구의회의 의원이나 그렇지 않으면 역사가나 이런 전문가가 많이 동참해서 검토되어야 할 사항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지 의견이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總務課長 裴鎮燮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처음에 지적하신 지역특성을 무시하고 또는 지역의 역사적인 의미를 상실하면서 행정구역 변경을 동간 경계를 조정한다든지 이런 작업이 이루어지게 되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다는 지적을 하셨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신문지상에서도 보도된 바가 있습니다마는 저희구 관내에서는 이 구역 명칭이라든가 경계가 불합리한 지역을 1차 조사를 한 바가 있습니다.

대부분 지역의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다만 광화문빌딩 만큼은 건물 한개동이 종로와 중구 2개 구에 걸쳐서 행정구역이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광화문 빌딩에 있어서는 조정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상급기관의 의견입니다. 그런 경우에는 의회 의견, 또 지역주민의 의견, 또 소유자의 의견까지 모든 의견들을 충분히 수렴해서 큰 부작용없이 원만하게 조정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방침이고 또 저희구에서도 그렇게 대비

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관내에서는 법정동명 변경이라든지 이런 행정계획은 현재는 없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둘째는 혹시 저희들이 몇 파악하지 못한 불합리한 경계조정같은 것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만약 그런 지역이 있다면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구의원들은 물론이고 지역주민들 의견까지도 충분히 들어서 조정하도록 그래서 연대의식이 같이 연결된 그런 지역을 인위적으로 자르거나 변경하는 일은 없도록 하겠습니다.

○**丁昌熙委員** 지금 과장님 말씀을 충분히 납득을 합니다. 하지만 지금 내부부에서 행정구역이라든지 이런 것이 행정편의 위주로 많이 정리될 상황에 놓여 있고 사실상 주민중에서 그런 것을 요구하는 지역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사실상 앞으로 여태까지 동 명칭을 조정하거나 구역조정할 적에 도로의 중앙을 기준으로 해서 동을 가르거나 행정구역을 정한 그러한 사례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러한 관료에 위치한 동은 사실상 도로를 경계로 해서 구역을 정리한다 하더라도 큰 문제가 없습니다마는 종로 미만은 동일 생활권하고 동일 주민의식이 굉장히 강합니다 해서 사실상 도로 중앙을 기준으로 해서 동 구역을 갖다가 획일적으로 하는 것은 너무 행정편의 위주의 행정이 아니냐는 그런 주민의 의견도 대다수 있다는 것을 참작하시고 종로구위원회에 소속되어 있는 위원 중에서는 전문가나 사실상 구청장이나 국장님들은 명에 의해서 1, 2년 정도 근무를 하시다보니까 지역실정에 대해서 전통성이라든지 특색, 주민의 애환을 그대로 소상하고 적나라하게 읽기에는 어렵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해보고 거기에 대한 전통성과 역사성에 대한 맥락을 이해하시는 그런 분들이 많이 위촉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해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한번 잘못 정해진 동의 명칭을 다시 바로잡는다는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정한데는 그런 후유증이 없도록끔 만전을 기해서 대책을 강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總務課長 裴鎮燮** 깊이 명심해서 시행하도

록 하겠습니다.

(「委員長!」하는 이 있음)

○**委員長 羅在岩** 예. 朴禹信委員! 질의하십시오.

○**朴禹信委員** 朴禹信입니다. 지금 丁昌熙委員께서 말씀하신 것을 보면 옛날에 도랑이 흐르는 그것을 경계선으로 했어요. 도랑 흐르는 것을, 그것을 길로 복개하고 보니까 우리 동네같은 데는 혜화동 같은 경우에는 가깝게 돌아온 게 있고 길을 복개하다보니까 갈짓자로 되어 있습니다. 주민들 의견을 물어보면 대부분 좋다는 사람도 있고 아니다 하는 사람도 있고 의견이 백출하거든요. 그런 것을 가급적이면 빨리 행정하는데도 그렇고 주민의 서로간이 이상합니다. 동네속에 타동으로 이렇게 되니까 그래서 그런 문제를 잘 조정을 해주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總務課長 裴鎮燮** 지금 저희과에서는 현재 그 지역에 관한 문제점을 아직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조사를 통해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비록 동 경계조정이라할지라도 거기에 실제 거주하는 주민들의 이해관계가 상당히 복잡하게 얽히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작은 규모의 경계조정이라 할지라도 거기서 사는 주민들의 이해관계 당사자들의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으면 경계조정이 실질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불편사항이 있으면 주민들 스스로 공감대가 형성될 경우에는 저희가 작업을 착수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앞으로 예의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委員長 羅在岩** 수고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金憲中委員님! 질의해 주십시오.

○**金憲中委員** 마침 이런 문제가 대두되기 때문에 겸해서 한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우리동네하고 창신3동하고 송인1동에는 지금 송인1동의 거주자가 창신1동으로 되어 가지고 1통13번지인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전부터 제가 10년전부터 경계선을 똑바로 하자 송인동장하고 창신3동장하고 얹혀놓고 얘기하니까 차일피일 하다가 지금 10, 20년 동 경계를 조정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창신3동이 아닌데 송인동 사람이 창신3동에

와서 행세를 한다 이말입니다. 그래서 구청
까지도 민원이 제출된 사실이 있는데 아직
까지도 1통의 최재구라는 사람입니다. 저는
직접 대놓고 얘기를 하는데 창신3동이
아니고 개울이 송인동 건너라 창신3동에
와서 행세를 하고 못된 짓을 혼자서 다하
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동장들한테 몇
번 얘기를 해서 조금 있다 합시다 하다가
지금까지 왔는데 그것을 분명히 해줄 수가
없습니까?

○總務課長 裴鎮燮 혹시 이 사람이 통장을
맡고 있습니까? 공식적으로

○金憲中委員 아니오. 아무것도 없습니다.

○總務課長 裴鎮燮 제가 정확히 이해를 못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비록 거주지는 다
른 동이라 하더라도 활동은 인접동 아무
지역에 가서라도 활동은 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통장이라든지 반장이라든지 그 지역에
안 살면서 공직을 맡고 있는 경우는 저희
들이 어느 정도 통제가 가능합니다마는.

○金憲中委員 아니 행정구역이 송인동인데
왜 창신3동에 와서 주민등록을 그대로 두
고.

○總務課長 裴鎮燮 그것은 다른 측면인데
실제 거주지에 주민등록을 안두고 위장전입
을 해가지고, 그것은 저희가 조치를 하겠습
니다.

○委員長 羅在岩 답변 다하셨습니다? 질의
더 있으신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종결을 하겠습니다. 질
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은 토론하시
기 바랍니다.

(「委員長!」하는 이 있음)

○委員長 羅在岩 예. 金憲中委員! 토론하십
시오.

○金憲中委員 金憲中委員입니다. 전국적으로
행정구역 및 행정의 발전 등 도시의 변경
에 따라서 부득이 측량법이 개정되었다고
봅니다. 이 필요성에 의한 내용인 즉 시행
령 223조를 삭제하고 58조 및 동법 4항을
적용하자 이러므로써 개정이 불가피하다고
이렇게 제안설명을 들었고 또 많은 질의를
했습니다. 원만한 답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안대로 개정함이 본위원회는 옳다고 보고
동의안을 제시합니다.

○委員長 羅在岩 원안대로 가결하자는 金憲
中委員의 토론이 나왔습니다.

(「委員長!」하는 이 있음)

예. 丁昌熙委員! 토론하십시오.

○丁昌熙委員 측량법시행령 제35조 지방지명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구지명위원회 위원장
은 구청장이 되고 위원은 3인 이상 구청
장이 위촉한다고만 되어 있습니다. 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질의시간에 질의한 바와 같
이 조선조 이래로 역사적으로나 문화적으로
전통이 보존되어야 할 값진 유산입니다. 동
명 역시도 그러한 맥락을 같이해서 여태까
지 동 명칭이 개정되거나 동 구역을 조정
할 적에는 행정편의 위주로 많이 이루어진
사례가 너무 빈번합니다.

해서 이러한 중요성에 비추어 지명위원회를
과거의 전통과 역사지식을 가진 전문가
나 지역에 대해서 이해를 가지고 있는 주
민의사를 들어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
기 때문에 구청장께서 위촉은 하되 그러한
역사적인 맥락을 같이하는 전문가나 학계
또는 주민을 위원으로 위촉한다는 문구가,
자구가 삽입되어야 타당하지 않겠느냐 생각
하면서 부분적으로 수정 동의안을 제출합니
다.

그리고 金憲中委員께서 말씀하신 금번에
상정된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위원회 구성에 대해서는
부분적으로 수정동의가 필요하지 않겠는가
생각하면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합니다.

○總務局長 洪起和 丁委員님! 구성 제2에
보면 지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3사람 이상을 지명위원으로 위
촉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위원 7인
중에서 3인 이상이면 4인도 할 수 있는데
이것으로 충분하지 않겠습니까?

(○朴勸先委員 委員席에서 - 주민 대표
성은 빠졌지요?)

○總務局長 洪起和 委員長님! 이 내용은
속기를 중단했으면 하는데요.

○委員長 羅在岩 잠시 속기를 중단하겠습니다.

(10時41分 記録中止)

(10時43分 記録開始)

○委員長 羅在岩 丁昌熙委員님이 수정동의안을 내놓으셨는데 그래서 지금 국장님이 지금 현재 조례로서도 충분하지 않느냐는 내용입니다. 丁委員님이 다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丁昌熙委員 그런데 전문가나 학계에 계신 분들이 경험이 사실상 외국에서 교육을 받고 오신 분들이 그런 선입견을 갖고 계신 분들은 아주 행정구역이나 동 명칭을 정할 적에는 확실적인 동명칭으로해서 번지를 쉽게 찾고 집을 쉽게 찾고 한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이해가 갑니다. 공감대가 형성이 된다는 것은 행정적인 능률성과 효율성을 극대화 하는데 대해서는 그런 학계의 조정이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종로구의 과거 역사성이라든지 전통성의 이해와 학계의 전문가를 구하기가 매우 어렵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사실상 종로구가 오랫동안 몇대에 걸쳐서 사신 분들의 그분의 의견이 과연 얼마만큼 반영될 것이냐 할 적에 지금 현재 구성원의 맥락에 이해되는 점을 봐서는 부분적으로 그러한 주민의 값진 유산을 지키고자 하는 의견이 많이 상실될 수 있는 요소도 충분히 함축하고 있지 않느냐고 할 적에 거기에 주민대표를 삼입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느냐는 생각입니다.

○總務局長 洪起和 지명에 관한 학식이라는 것은 공부를 많이 해서 학식이 풍부한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 지역에 오래 살고 옛날부터 잘 알아 가지고 그 지명을 정했는데 그 지역 특성에 맞게 정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丁昌熙委員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주민 중에서 그 고장에 관련된, 옛날부터 지명의 유래같은 것을 잘 아는 분을 정하는 겁니다. 丁昌熙委員님 말씀하시는 것과 같은 내용입니다.

(「委員長!」하는 이 있음)

○委員長 羅在岩 네. 鄭鍾九委員! 토론하세요.

○鄭鍾九委員 鄭鍾九委員입니다. 지금 丁昌熙委員님과 局長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그 지역에서 오래 살았다고 해가지고 그 지방에

대해서 잘 안다는 법은 없습니다. 사실 저희같은 동네도 도림동입니다. 보통 신도림동하고 도림동하고 혼동을 하는데 그 지역에 오래 살았다고 해가지고 도림동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이 별로 없는데 그럼 어떻게 해서 지금까지 내려와서 알고 있느냐 그 지역 주민들이 책자에, 과거부터 내려오는 역사에 의해서 염색 염자에 도시 도자 관청의 염색하는 곳이었다 해가지고 도림동입니다. 그래서 그런 과거에 학력이라든가 학식이라든가 그런 것을 지녀서 그 정도를 알만한 사람들이 과연 몇이나 되겠는가? 당주동 하면 왜 당주동이 됐나 그러니까 丁昌熙委員님 말씀도 옳겠지만 아까 金憲中委員님이나 局長님 말씀이 꼭 그 지역에 오래 살았다, 몇 대를 살았다 해가지고 그걸 안다는 법은 없다고 봅니다. 과거에 기록되어 있는 역사책에 과거의 모든 기록에 의해서 지금까지 모든 이름이 존재하고 있지 않나 하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以上입니다.

(「委員長!」하는 이 있음)

○委員長 羅在岩 네. 朴勸先委員! 토론하세요.

○朴勸先委員 朴勸先委員입니다. 맨 먼저 우리 金憲中委員님께서 말씀이 계셨고 또 우리 丁昌熙委員님께서 지역을 아끼고 종로구를 아끼고 심도있게 연구하시고 개발하신 필역을 들었을 때 느끼는 바가 많습니다. 우리 洪局長님의 말씀도 우리 丁委員님 말씀하신 바와 충분히 그 내용에 포함이 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할 때 우리 丁昌熙委員님께서 수정동의안을 말씀하셔서 고려를 해주시고 우리 金憲中委員님 말씀하신대로 원안가결 했으면 어떻겠느냐 하는 생각을 가져 봅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羅在岩 委員長으로서 한 말씀 드리면 지금 우리 鄭鍾九委員님께서 말씀하신 도림동에 대한 얘기를 들었습니다. 현재 우리 문화공보실에서도 각 동네마다 전통있는 동마다 관계되는 것을 만들어서 지금 갖고 있는 걸로 압니다. 그것이 홍보 차원에서 좀 안된 것 같고 도림동같은 그런 것을 아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되느냐 하는데 수궁이 갑니다. 그러면 조금 전 朴

勸先委員長님께서 말씀하신 원안대로 통과를 해주십사 하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우리 丁昌熙委員 수정동의안 취소하시겠습니까?

○丁昌熙委員 지금 과거의 역사성을 지닌 고유의 동 명칭이 행정편의 위주로 해서 행정동 1개 구역에 법정동 십 수개가 있는 명칭을 하나나 둘로 단일화시키고자 하는 내부부의 지침이 앞으로 정해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鄭鍾九委員님 말씀대로 도림동의 명칭이 세종로동으로 바뀔 그런 위험에 처해져 있는데 명칭을 바꾸는 것이 타당하느냐 하는 그런 중요한 결정사항이 주민의 다수가 불참한 가운데서 요식적인 절차를 밟아 가지고서 결정될 소지와 위험성이 있습니다. 사실상 그래서 그 委員會 구성에 대해서 주민 중에서 지역의 명칭을 잘 알고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는 그러한 분들의 委員會 참여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局長님께서 답변이 앞으로 委員會 구성에 있어서는 충분히 그러한 점을 반영해서 구성할 것이며 이러한 동 명칭에 대해서 가급적이면 전통성과 문화성을 살리는 가운데 운영하리라는 그런 말씀이 있으셨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수정동의안은 철회하는 것으로 하고 앞으로 局長님께서 원만하게 운영을 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철회하기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羅在岩 좋습니다. 그러면 朴勸先委員님 동의안에 丁昌熙委員의 재청으로 받아들이고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종로구지명위원회 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41회 臨時會 제1차 시민행정위원회는 산회하고 심사보고서는委員長과 幹事가 협의하여 작성 議長에게 보고하겠습니다.

散會를 선포합니다.

(10時55分 散會)

○出席委員 7名

羅在岩	丁昌熙	玄壽漢
鄭鍾九	朴禹信	朴勸先
金憲中		

○關係公務員 2名

總務局長	洪起和
總務課長	裴鎮燮

